

2016.02.01 개정판

# 투자일임계약서

고 객 명 : \_\_\_\_\_

회 사 명 : (주)이룸투자자문

\_\_\_\_\_ (이하 '고객'이라 한다)와 (주)이룸투자자문(이하 '회사'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합니다.

### 제 1 조 (목적)

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,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합니다.

### 제 2 조 (투자일임자산 및 투자대상)

- ① 투자일임자산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은 재산 및 당해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(현금포함)을 말합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을 제공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을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에 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합니다.

### 제 3 조 (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)

고객은 투자일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회사에게 일임 및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.

- ① 고객의 투자목적과 성향에 부합하는 자산배분전략의 선택
- ② 각 자산을 구성할 포트폴리오 및 금융투자상품 선택
- ③ 투자일임재산 및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결정과 이행
- ④ 그 밖의 투자일임서비스와 관련된 사항

### 제 4 조 (투자일임업무의 수행기준 및 절차, 방법)

회사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투자를 위하여 깊이 있고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근거로 투자결정을 하고 있으며, 회사의 투자철학인 '비즈니스 모델의 가치'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,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을 따라 운용합니다.

- ①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
- ② 기업 탐방 등 현장중심의 리서치 활동을 통해 투자대상종목을 관리
- ③ Team Approach를 통해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투자의견 도출
- ④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 확보에 주력

### 제 5 조 (투자일임담당자의 선임 및 변경)

-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운용인력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담당자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운용인력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④ 고객이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합니다.
-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단, 투자운용인력이 법령이나 사규 등의 위반 또는 사망, 퇴직 등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-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시에는 '고객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,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'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

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- ⑧ 고객이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,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 6 조 (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)

-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계약자산 운용에 반영하도록 합니다.
-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.
-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.
- ④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 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자산에 편입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.
- ⑤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(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.)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,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,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 7 조 (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절차)

- ① 회사와 그 임직원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②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며, 불가피한 경우 사후 통보의 방법도 가능합니다.
- ③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, 실적 및 잔액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.
- ④ 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 8 조 (투자결과 등의 통지)

회사는 다음 각호에 사항에 관한 보고서(이하 "투자일임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단,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.

- ①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
- ②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, 매매가격, 매매회전을 등 운용현황
- ③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, 취득가액, 시가 및 평가손익
- ④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#### 제 8 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지)

-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명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,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- 1.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  - 2.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,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, 질권

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

3. 고객이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(계약한 연도에는 3회)이상 재무상태, 투자목적등의 변경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

-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,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, 계약은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합니다.

## 제 9 조 (업무의 위탁)

-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[별지2]과 같이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10 조 (계약체결 및 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고객과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.
- ②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.
- ③ 회사는 최초 계약체결일 후 매 1년마다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를 정산할 수 있으며 (갱신)계약금액은 종전계약 만기일 당일의 투자일임재산 총 평가금액으로 재설정 합니다.

## 제 11 조 (투자일임수수료 및 지급 시기)

- ① 회사는 투자일임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합니다. 징수기준은 [별지1] 세부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  - 1. 기본수수료 :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년 1회 선취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. 증액시에는 계약 잔존일수를 계산하여 추가 징수하고, 감액시에는 고객에게 환급합니다.
  - 2. 성과수수료 : 투자성과에 대하여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.
- ② 고객은 제1항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, 지급시기는 [별지1] 세부 계약조건에 수 수수료 지급시기에 따릅니다.
-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,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
## 제 12 조 (계약, 만료, 해지시의 재산형태)

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, 해지하는 시점에서의 재산 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합니다.

## 제 13 조 (투자일임재산의 평가)

투자일임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현금 외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, 계약 체결시는 계약일 전일, 계약해지시는 해지일 전일, 계약만료시는 만료일(이하"평가기준일"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.

- ① 자본시장법 제238조 (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 )에 의한 재산종류별 평가방법
- ② 기타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상호간 합의

## 제 14 조 (투자실적의 평가)

-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투자일임자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합니다.
- ② 주식에 있어 배당,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,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배당락가격,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·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합니다

## 제 15 조 (손익의 귀속)

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회사의 투자일임자산을

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.

#### 제 16 조 (통지의무)

-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, 주소와 연락처,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된 투자서비스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
- ②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[별지1] 세부 계약조건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,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통지합니다. 단,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합니다.
- ③ 고객이 변경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#### 제 17 조 (회사의 금지행위)

회사와 그 임직원은 일임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.

- ① 고객에게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대여를 중개,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. (단,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제외)
- ②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보관, 위탁을 받는 행위
- ③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
-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
- ⑤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. 단,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가능
- ⑥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. 단,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는 가능
- ⑦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⑧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
- ⑨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. 단,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가능
- ⑩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- ⑪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않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. 단, 개별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,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가능
- ⑫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위탁 또는 인출을 위임 받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금융기관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임 받는 행위
- ⑬ 자본시장법, 동법 시행령, 금융투자업 규정 기타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. 단 고객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

#### 제 18 조 (신의성실의무)

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 19 조 (비밀유지의무)

-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,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내용과 관리상황,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- ③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운용계좌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일체의 자료를 계좌개설 영업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④ 고객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#### **제 20 조 (면책)**

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- ① 천재지변, 전시.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
- ② 고객의 귀책사유(고객의 운용지시 포함)로 인한 손실
- ③ 제 서류 및 인감(또는 서명감)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- ④ 회사 이외의 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

#### **제 21 조 (자산의 소유권)**

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습니다.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거나 자문 하지 않습니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위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1. 주식매수청구권 행사
- 2.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
- 3. 유상증자의 청약
- 4.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
- 5.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
- 6.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
- 7. 파생결합증권의 권리행사
- 8. 자본시장법 5조 1항 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

고객은 회사에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.

#### **제 22 조 (통지의 효력 등)**

- ① 회사의 고객에 대한 서면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.

② 회사는 고객이 계약 체결 후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송될 경우 (회사의 과실 없이 고객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)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

#### **제 23 조 (계약의 내용)**

'고객'과 '회사'가 합의한 본 계약의 내용은 [별지1] 세부계약내용에 따릅니다.

#### **제 24 조 (관련조항)**

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.

#### **제 25 조 (관할법원)**

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

[별지 1] 세부계약내용

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약기간             | 2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자산             | 금 _____ 원정(W _____ 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본수수료            | (재)계약금액의 연 <u>1</u> 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도 해지수수료         | 반환하는 선취수수료의 <u>50</u> 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환급수수료 계산         | [기본수수료×(잔존일수/365일)]-중도해지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성과수수료            | 순수익의 <u>10</u> 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수료 입금계좌         | 우리은행 1005-502-040553 예금주: (주) 이룸투자자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수료 지급시기         | 납기일 <u>3</u> 영업일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증액수수료 계산         | [증액금액×기본수수료율×(잔존일수/365일)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거래증권사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좌번호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고객'에 대한<br>통지장소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택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장 <input type="checkbox"/> E-MAIL    (선택 후 체크) |
| 주소 / 이메일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 화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객요청사항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투자운용인력(경력)       | 조세훈 / 이룸투자자문 <u>8</u>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회사의 개요           | 설립일: 2008년 08월 08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자본금: 3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주요사업: 투자자문일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대표이사: 조세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[별지 2]

## 업무위탁 현황

회사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. 고객과의 계약체결 후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위탁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우편,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고지할 것 입니다.

| 위탁업체명      | 위탁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미래에셋 펀드서비스 | 투자일임재산 기준가 산출 및 수익률 관리를 위한<br>사무관리업무 |

[별지 3]

## 투자일임자산의 재계약시 기준금액 산정 방법

- I. 투자일임자산 재계약시 평가금액이 계약금액에 비해 손실일 경우
  - Ex) 2013년도 계약금액 10 억원, 재계약시 평가금액 9 억원 일 때
    1. 2014년도 계약금액 = 9 억원
    2. 2014년도 기본수수료 = 1%
    3. 2014년도 성과수수료 기준금액 = 10 억원
  
- II - i). 2014년도 계약만기시점에 투자일임자산 평가금액이 9.5억원 인 경우
  1. 2015년도 계약금액 = 9.5억원
  2. 2015년도 기본수수료 = [9.5억원 × 기본수수료율%]
  3. 2015년도 성과수수료 기준금액 = 10 억원
  
- II - ii). 2014년도 계약만기시점에 투자일임자산 평가금액이 8억원 인 경우
  1. 2015년도 계약금액 = 8억원
  2. 2015년도 기본수수료 = 1%
  3. 2015년도 성과수수료 기준금액 = 10 억원